

[] 신고서
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 []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고인	① 상호 (명칭)	한글	② 사업자등록번호
		영문	
	③ 성명 (대표자)	한글	④ 생년월일
		영문	
	⑤ 담당자	성명	
		연락처	
⑥ 주소 (사업장)		(전화번호:)	

신고 내용

수입폐기물 배출자	⑦ 상호(영문)	⑧ 사업자등록번호
	⑨ 사업장 소재지	
	⑩ 발생공정	

⑪ 수입예정일(수입예정월)	⑫ 국내 하역항	⑬ 수출국(경유국)	⑭ 단일 또는 포괄여부
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

종류	⑮ 폐기물				⑰ 운반		⑱ 처리			
	분류번호	⑯ 성질·상태	⑰ HSK No. (10자리)	⑱ 수입량 (톤)	운반자	운반종류	처리 구분	업소명	처리 방법	처리량 (톤/년)
	□□-□□-□□									
	□□-□□-□□									
	□□-□□-□□									

⑳ 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--------	------	------

㉑ 변경사유	
--------	--

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
·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(변경)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<p>첨부서류</p>	<p>1.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. 수입가격이 선적가격(C.I.F.)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.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(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다.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·운반수단·운반업자·운반일정·보관장소·보관일정·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라.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마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(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바.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사.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아.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자.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,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(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차.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폐기물의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목에 따른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전단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2.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 원본</p>	<p>수수료 없음</p>
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

작성요령

1. ⑨란은 수입하려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2. ⑩란은 수입하려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2의2. ⑪란은 포괄수입의 경우 최초 선적일과 최종 선적일을 모두 적습니다.
3. ⑬란은 수출국과 경유국 모두를 적습니다.
4. ⑭란은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.
5. ⑮란의 종류란에는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, 분류번호란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 분류번호(세분류 번호)를 적습니다.
6. ⑯란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에 따른 분류번호(고체상태=1, 액체상태=2)을 적습니다.
7. ⑰란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(HSK No.: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)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.
8. ⑱란은 수입계약서 등에 따른 수입예정량을 적되,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예정량을 적습니다.
9. ⑲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"자가"로 적고,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, 운반종류란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에 따른 분류번호(트럭/컨테이너=1, 탱크로리=2, 기타=3)를 적습니다.
10. ⑳란의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"자가"로,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"위탁"으로 적고, 처리방법란에는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에 따른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.
11.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.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 : 유역(지방)환경청장